

핀테크 거래의 과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P2P대출 중심으로 -

이연화** · 박성욱*** · 나형중****

〈요 약〉

핀테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모델에서 금융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기술에 맞게 기존금융과 IT기술의 융합하였고, 서비스 분야로는 결제, 송금, 자산관리, 대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핀테크 서비스는 P2P거래가 발달하여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P2P누적 대출규모는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약 6.2조 원으로 2016년 말 기준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행 P2P대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들은 개인 간 거래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대부업 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혹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르게 과세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P2P대출거래에 대한 법적성격을 투자계약증권, 지분증권, 지분형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든 P2P대출거래 투자수익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적격 P2P투자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2019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인하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는데, P2P투자에서 얻은 이익을 모두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분류하기는 애매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P2P대출 투자수익에 대해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부업 등록 여부에 따라 분류할 필요 없이 P2P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일회성 거래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발급 받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는 전자 시스템 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서류나 절차를 간편화하여 입법하도록

* 본 논문은 주저자의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본 학위논문의 심사위원님과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세무관리전공), 세무사, dusghk836@naver.com, 주저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교수, sopark@khu.ac.kr,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연구교수, fresh_na_77@hanmail.net, 공동저자

한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된다면 P2P대출 시장의 축소를 유발할 수 있고, 행정비용이나 소요시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의 P2P대출거래의 사업모델에 따라 과세소득을 분류한다.

P2P대출거래는 그 사업모델에 따라 법적성격을 투자계약증권, 지분증권, 지분형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하여 직접대출형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하고, 간접대출형은 P2P중개업체의 분배 단계에서 상환 받지 못할 위험도 떠안게 되므로 금전의 대여가 아닌 투자의 성격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P2P플랫폼사의 사업모델에 따라 과세유형을 분류하여 과세함에 있어 P2P플랫폼사나 과세관청의 판단이 모호하여 행정비용 등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P2P플랫폼사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P2P플랫폼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 금융사에서 제공하던 절차보다 간편한 시스템으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발생시키므로 금융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적격 P2P투자에서 얻은 이자수익에 한정하여 세율을 인하하였다. 이 적격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원천징수세율이 아닌, 자본시장법이나 타법으로 P2P플랫폼사를 규제함이 타당하다.

〈주제어〉 핀테크 과세, P2P대출, 비영업대금이익

I. 서 론

본 논문은 핀테크 거래 과세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핀테크 서비스 중 대출 분야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뜻하는 개념으로, 기술이 금융을 주도하는 현상을 뜻한다(최창열, 2015).¹⁾ 국내·외 주요 핀테크 서비스로는 결제, 송금, 자산관리, 대출로 분야를 세분화 할 수 있다(Lee and Shin, 2018). 결제분야는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수수료 절감을 내세우며 새로운 결제모델을 등장시켰고 삼성페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있다(정기석, 2015). 송금분야는 금융 기관이 개입되지 않는 시스템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는 모델로써 온라인을 통하여 거래 가능한 가상 화폐, 비트코인 등 신규 화폐가 있다(박대현, 2014). 자산관리 분야는 온라인 투자 자문, 개인 금융 데이터 관리, 재무 관리 등의 서비스를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동화시스템을 통하여 기존의 투자 자문사보다 저렴한 비용이점이 있는 모델로써 베테먼트, 퍼스널 캐피탈 등이 있다(김범준과 엄윤경, 2017).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 분야인 대출 분야는 대출, 창업자금 지원 등 투자와 관련된 금융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신속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모델이다(이경진, 2016). 기존

1)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정보통신기술(technology)이 융합된 서비스를 칭한다(주강진외, 2016).

금융 대비 저렴한 수수료, 신속한 이체 등 빅데이터를 기반(김병우, 2015)으로 사용자 신용도를 분석하여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기존 금융사의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의 자금 처로 인식되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활성화의 기반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2019년 6월말 기준 P2P누적대출액은 약 6.2조원으로 2016년 말 기준 6,289억 원에서 2년 6개월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²⁾ 또한 차입이 불가능하였던 차입자가 차입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거래를 창출시키는 장점도 있지만, 현행제도 및 과세체계를 적용하면 거래를 위축시키게 단점도 존재한다. 기존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경우 14% 세율로 과세됨에 비해, 플랫폼대출로 인한 투자수익은 25%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핀테크 서비스 분야 중 대출과 관련하여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2P대출에³⁾ 대한 과세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들은 기존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P2P투자수익에 대해 25%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적용된다.

대부업은 등록의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혹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대부업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는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 후 각 소득세율,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어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인 개인이나, 법인은 P2P투자에서 얻은 수익은 일시적·우발적인 금전 대여에 따라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25%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비영업대금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다. 일시적·우발적인 금전대여인지, 사업성으로 인정되는 금전 대여인지에 따라 비영업대금이익 혹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소득세 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P2P대출이 단순히 비영업대금이익 혹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게 아니라, 다양한 P2P대출 사업모형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분류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하여 P2P투자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P2P플랫폼을 통한 대출거래를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다. P2P대출 온라인 플랫폼은 100%자회사인 대부업, 대부중개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를 통하여 대출계약을 하고 대출자에게 이자소득에 대해 2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2)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국회 정무위 의결, 2019. 8. 22.

3) P2P대출이란 P2P(Peer-to-Peer)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P2P 대출 중개는 이러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김동우, 2015).

이 납세과정은 금융기관에서 예금자에게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는 의무와 다르지 않다. 소득세법 제 16조 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사업을 목적으로 금전 대여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인 금전의 대여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 등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자에 대하여 25% 세율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 간의 금융거래정보를 통하여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입법 취지이다. 이처럼 P2P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준하는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인일 뿐 아니라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는 대부업 등록 의무화를 제시한다. 일회성 P2P플랫폼에 투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기에, 사업자등록 절차를 간편화하여 입법 하도록 한다. P2P투자를 위하여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 한다면 아무리 전자시스템 망을 통하더라도 P2P대출 시장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비용이나 소요시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두 번째 방안으로는 다음의 P2P대출 거래의 사업모델에 따라 과세소득을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P2P대출 사업 모델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에 열거하여야 한다. P2P상품의 성격에 따라 실질은 고위험 채권투자이거나 지분투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14%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다만, P2P플랫폼사의 사업모델에 따라 과세 유형을 분류하여 과세함에 있어 P2P플랫폼사나 과세관청의 판단이 애매하여 행정비용 등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세 번째 방안으로 P2P플랫폼사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통일한다. P2P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기존 금융사에서 제공하던 절차보다 조금 더 간편한 시스템으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발생시키므로, 금융상품의 투자수익으로 보아 14% 세율로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세율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적격 P2P투자에서 얻은 이자수익에 대하여 2019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세율인하가 아닌, P2P투자에서 얻은 수익은 금융회사에서 만든 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하여 P2P투자의 수익 성격을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님을 명시화 할 필요가 있다.

P2P투자수익에 대하여 비사업자인 개인에게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간주하여 25%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고 있는데, 과세당국이 수평적 공평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법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본 연구는 P2P대출의 투자수익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정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핀테크 거래의 배경과 산업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Ⅳ장에서는 P2P대출에 대한 주요국

의 과세제도를 연구하고, 제 V 장에서는 P2P대출에 대한 과세제도 문제점을 지적한다. 제 VI 장에서는 P2P대출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제 VII 장은 결론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정리한다.

II. 핀테크 거래의 배경과 산업현황

1. 핀테크 도입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에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었다. 금융기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대출과 재정위기, 저금리에 따른 대출 수익감소 등으로 인해 기존의 수익모델에서 혁신적인 금융시스템을 활용한 수익모델 창출에 대한 대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대안이 핀테크가 된 것이다(최창열, 2015). 핀테크 서비스는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 기존 금융회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기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도 핀테크에 대한 정책지원을 펼치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과 금융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손진빈 외, 2019). 미국은 예측 가능한 규제로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은산 분리 제도, 연방기관과 주 정부의 감독 기관들이 각 기능별로 감독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의 금융 규제를 유지하면서, 비용 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비합리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이경전, 2016). 주요 서비스로는 결제, 송금, 자산관리, 대출로 분야를 나누어 볼 수 있다.

2. 핀테크 서비스 유형 및 산업현황

가. 결제

모바일 결제 서비스란,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에 대한 결제를 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 한다(Dahlberg et al., 2008 ; Yang et al., 2012).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결제를 간소화시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결제 포기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창출한다(조은영과 김희웅, 2015). 결제 분야의 예로 스퀘어(Square)는 개인 및 상인들이 POS(Point Of Sales)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승인하여(송경석, 2015 ; 김철진, 2016), 이동형 매장을 운영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인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결제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 외에도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와 가맹점, 결제계좌를 생성해주는 은행, 카드사 등 다양한 주체의 상생이 필요하다(Karnouskos et al., 2004).

이는 관련 시장을 확대시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래의 창출로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금결제가 대부분이던 거래가 새로운 간단한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투명하게 수익이 노출되고 새로운 세수 수입원이 창출되었다.

나. 송금

송금 분야는 온라인 쇼핑의 보완재로 수요가 시작되었다(문병순과 허지성, 2014). 과거에는 모바일에서 개인 간의 물품 거래 시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개인들은 거래 건마다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 불편함을 없애고자 가상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여 가상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의 거래 편의를 향상시켰다.

송금 분야의 예로 기존의 은행 서비스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비바리퍼블리카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CMS(Cash Mangement Service) 자동이체 서비스를 개발하였다(최진용과 김길선, 2019).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수많은 액티브X를 설치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으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고 액티브X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방법을 개발하였다(Song et al., 2012). CMS 자동이체를 위해 활용되는 ‘펌뱅킹맘’을 이용하면 비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돈을 출금해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스로 송금을 해보면 모바일 사용을 잘 못 하는 이들도 쉽게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한 송금 분야는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며 발전하였다.

다. 자산관리

자산관리 분야는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신용어로 로봇(Robot)과 자산 운용가(Advisor)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분석과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관리해주는 서비스 분야이다(임철수, 2017). 과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고액자산가 위주로 자산관리를 받았다면, 현재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하여 낮은 수수료로 누구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박재연 외, 2016).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바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산관리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을 줄여 준다. 금융회사 직원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로 인해 선호도가 높다(유현선, 2018).

해외성공적인 사례로는 2008년 뉴욕에서 설립한 베타먼트(Betterment)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해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 및 운영하여 목표 수익에 달성하도록 돕고, 재무 설계와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김범준과 엄윤경, 2017). 재무 설계 서비스는 은퇴 후 계획, 내 집 마련 등 고객의 투자 목표 단계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투자계획과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상품 매입 이후 24시간 모니터링 및 포트폴리오 자동 밸런싱을 수행한다. 은퇴설계 서비스는 현재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현황 및 남은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추산한 후 투자 목표를 설정

하며,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 등 고객명의로 된 모든 자산에 맞춰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 베테먼트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여 저렴한 수수료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이성복, 2015).

국내의 성공적인 기업은 2015년 7월 창업한 스타트업 에임(AIM)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윤민섭, 2015). 스마트폰에서 자산, 연봉, 투자목표를 선택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목표 달성과 위험성향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한다(Sironi, 2016). 이 과정에서 국내·해외주식, 원자재 등의 투자 비율을 산출, 2,500개의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중 비용 대비 수익성과 유동성이 뛰어난 ETF를 부문별로 한 개씩 추천한다. 투자 후에는 24시간 모니터링 및 포트폴리오 자동 리밸런싱을 실시하고, ETF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매매 과정을 대신 수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였다.⁴⁾ 우리나라는 이러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아직 초창기이기에 다양한 리스크의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는 미래의 부 창출의 조력자로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윤승, 2016).

라. 대출

대출은 넓게는 크라우드 펀딩⁵⁾의 한 유형이다(고윤승, 2016).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형,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명아, 2016).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P2P대출이다(최수석과 손재영, 2017).

핀테크 기업 중 핀테크 주기율표에 가장 많이 올라와있는 분야는 23개가 등록된 대부업이다(박서기, 2015). 대부업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은 렌딩클럽으로 기존 금융회사에 비해 디폴트 확률이 낮으므로,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맡기고, 대출을 받는 사람도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돈을 빌린다. 또 다른 기업으로는 온테크가 있는데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 대출 전문회사로서 대출서류심사를 단 10분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제 V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P2P대출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대출거래의 유형별로 크게는 직접대출형, 간접대출형으로 나뉜다. 간접대출형에는 원리금수취권매매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 그리고 최근 등장한 집합 투자형, 부동산 담보 대출형이 있다(성희철, 2016).

4)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bs_view.jsp?seqno=22299&no=2&s_title=로보어드바이저&s_kind=title&page=1

5)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은 자금 수요자가 사업이나 프로젝트 관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여 불특정다수(Crowd)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원받아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모으는(funding) 행위이다(김덕규와 임춘성, 2018).

직접대출형은 중개업체의 중개 없이 차입자와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과 중개업체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소개하는 방식이 있다(윤민섭, 2012). 후자는 중개업체의 사이트에 차입자의 차입 청약을 게시하고, 투자자가 이에 대하여 개별적인 승낙을 하여 대출 해주는 방식이다(장순필, 2018). 우리나라의 간접대출형의 대표적인 모델은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이다.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의 구체적인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다(배재권, 2018). ① 차입자가 대출조건을 게재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P2P플랫폼은 신용등급 모형을 이용해 대출심사를 한다. P2P플랫폼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심사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대출자 개개인에 맞춤형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대부업체 대비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차입자가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P2P플랫폼은 소득 및 보유자산 등의 차입자 정보와 사업개요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투자자는 P2P플랫폼이 공시한 차입자 정보를 확인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투자 청약이 모집이 이루어지면 P2P플랫폼은 연계대부업체에 대출실행을 요청한다. 연계대부업체는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원리금수취권을 P2P플랫폼에 매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투자금으로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다. ④ P2P플랫폼은 연계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재매도한다. 투자자는 투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2018년 12월에 보도자료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에 의하면 2017년 2월에 제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하였고, 핀테크 산업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급부상하는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대출상품 등에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P2P대출 법제화 추진 기본 방향에 대한 법안 발의 안건은 P2P업체를 별도 금융업으로 인정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차입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⁶⁾ ‘P2P대출’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중금리, 소형부동산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15년 이후 크게 성장하여 ‘18.9월말 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4.3조원으로 대출 증가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⁷⁾ 대출 유형별로 부동산 관련 대출은 60%를 상회하고, 신용대출은 20%를 하회하는 등 부동산대출에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P2P중개업체를 통하여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업이므로 기존의 법률이 아닌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세법도 새로운 개정이 필요하다.

6)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보도자료, 2018. 12. 12.

7)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보도자료, 2018. 12. 12.

III. 선행연구 검토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병욱(2018)은 P2P대출과 관련해 현재 활용하고 있거나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절세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비정상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선 방안 네가지를 제시하였다. 개인투자자의 조세회피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원 단위 미만 절사 규정을 적용한 전략, 두 번째 익명조합에 투자 후, P2P투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귀속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대부업 등록, P2P대출에 투자하여 필요경비 산입과 낮은 세율 적용을 통한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법, 네 번째는 법인 설립 후, P2P투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분석하였다. 이에 개편방안으로는 첫째, 납부세액의 원 단위 절사가 아닌 누계 기준 올림 방식을 적용한다. 둘째, 대부업 등록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P2P투자기간, 투자횟수 등을 고려하여 P2P투자의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한다. 셋째, 공동사업자인 투자자가 사업에 실제로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으로 마련해서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넷째, 간접중개형 P2P대출의 투자수익 과세 시,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닌 금융상품의 일종인 채권의 투자수익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으로 인해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P2P대출의 사업구조를 직접중개형과 간접중개형으로 구분하여 주로 간접중개형의 대표적인 원리금수취권매매형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P2P투자수익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유형별 거래 형태의 법적성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2P대출은 직접대출형 및 간접대출형으로 분류한다. 직접대출형은 P2P중개업체 없이 당사자간 직접거래 및 P2P중개업체의 중개에 의한 당사자간 직접거래로 분류되고, 간접대출형은 원리금수취권매매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 집합투자형 및 부동산담보형으로 분류된다. P2P대출의 거래 유형별로 대출에 대한 법적성격을 분류하고 현행 과세체계를 분석한다. 핀테크 시대에 정부가 제시한 P2P가이드의 방향과 맞게 과세체계를 제시하여 향후 개정방향에 있어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된다.

IV. 해외사례 분석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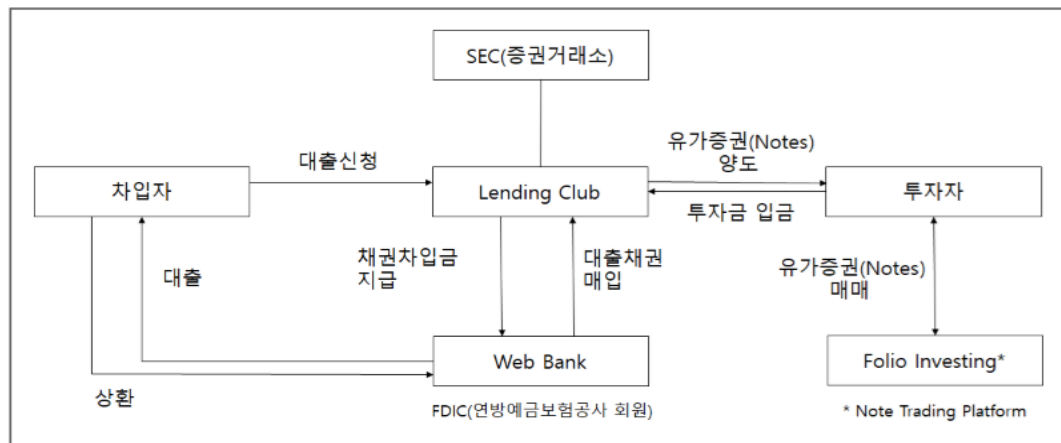
가. P2P사업모형

미국의 P2P플랫폼 중 대표적인 회사는 Lending Club 및 Prosper가 있다(Galloway, 2009). P2P 플랫폼은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유가증권(Notes) 형태로 증권화시켜 투자자들

에게 매매하는 역할을 하고, 대출업무는 기존 금융회사에서 진행한다. 이처럼 미국의 P2P사업모형은 직접대출형이 아닌 간접중개형이다(Amit & Zott, 2015).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P2P 플랫폼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업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미국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Security Exchange Commission,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가증권의 발행주체인 P2P플랫폼은 SEC의 증권규제를 받는다(Yin, 2016). SEC에서 승인된 증권이므로 투자자는 P2P플랫폼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Zeng, 2013).

미국의 P2P플랫폼 중 Lending Club의 사업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Malekipirbazari and Aksakalli, 2015). ① 차입자는 연계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② Lending Club이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증권화된 유가증권을 투자자에게 발행한다. ③ Lending Club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매매 플랫폼을 통하여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다. 투자자는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유가증권 매각을 통하여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그림 1〉 미국 Lending Club의 P2P사업구조



출처 ; 김정기(2017), “P2P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의 리스크관리방향”

나. P2P투자수익 과세

미국은 채권을 포함하여 자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은 장기보유자산과 단기보유자산으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자본자산(capital asset)이란 개인용 자산이나 투자용 자산을 의미하며 종류로는 주식, 채권, 주택, 가구, 자동차 등이 있다. 업무용 상각자산, 업무용 부동산,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 자산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 등은 자본자산에서 제외된다.

P2P플랫폼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투자수익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본자산으로 분류하여 과세된다. 채권의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가 발생하고 양도손익은 자본이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자본이득과세의 일반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보유기간 1년 이하인 경우는 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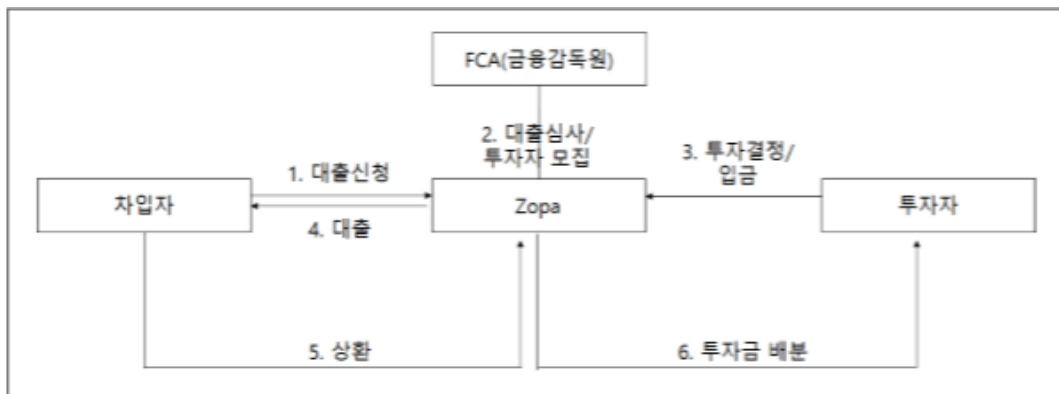
자본 이득·손실로 구분하고, 1년 이상인 경우는 장기자본 이득·손실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단기양도이익의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 한계세율로 과세하고, 장기양도이익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세율로 과세한다. 통상소득세율은 10%~39.5%의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장기자본이득세율은 15%,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채권의 양도손익은 다른 자본자산의 양도손익과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보유기간에 따라 장·단기별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있다. 단기양도손실은 단기양도이익에서 차감하고, 장기양도손실은 장기양도이익에서 차감하며 손실을 상계 후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2. 영국

가. P2P사업모형

P2P대출이 처음 시작된 국가는 영국이다(김동우, 2015). P2P운영주체는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 FCA)에 등록하고 투자자의 자금을 운영주체와 별도 계정으로 경리하여야 하고, 일정한 자기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손영화, 2016). 영국 P2P 사업모델의 장점은 P2P플랫폼이 소비자 대출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계금융회사가 없어도 차입자에게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 Zopa의 사업모델을 통해 영국의 P2P사업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Milne and Parboteeah, 2016 ; 정대와 학회연, 2017). ① 자금수요자인 차입자는 P2P플랫폼인 Zopa에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심사가 완료되면 자금공급자인 투자자를 모집한다. ② 투자자는 Zopa가 게재한 투자자 모집공고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 후 투자금을 입금한다. ③ Zopa는 투자금으로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다.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Zopa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 영국 Zopa의 P2P사업구조



출처 ; 김정기(2017), “P2P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의 리스크관리방향”

나. P2P투자수익 과세

영국에서 P2P이자(금융회사 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전병욱, 2018)). 2016년 4월부터 P2P이자를 포함한 개인의 저축을 통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500 또는 £1,000을 비과세 해주는 개인저축세액공제(Personal Savings Allowance)제도를 도입하였다. 적용대상 금액은 과세표준 £42,700이하인 개인은 £1,000이하, 과세표준 £42,700초과 £150,000이하인 개인은 £500이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2016년 4월부터 해당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20%)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표 1〉 영국의 개인저축공제

과세표준	개인저축공제 한도
~ £42,700이하	£1,000
£42,700초과 ~ £150,000이하	£500
£150,000초과	해당 없음

또한 핀테크 및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4월에 Innovative Finance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도입으로 P2P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직접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V. P2P대출 거래 과세의 문제점

1. 유형별 거래 형태의 법적성격

P2P대출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이다. 사실, 개인 간 금융거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개인 간 금융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P2P대출은 거래 유형에 따라 법적성격이 다르게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P2P대출 거래의 유형은 직접대출형과 간접대출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윤민섭, 2014). P2P대출의 특성은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기관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론과 실제운용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팝펀딩, 머니옥션 등 P2P금융 관련 업체의 경우,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는 담보 제공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매수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대출기관에 대한 금융기관의 승인권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윤민섭, 2012).

이후의 다른 연구들도 원리금수취권매매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P2P거래 중에는 집합투자형, 부동산 관련 대출 같은 보다 복잡한 형태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유형별 거래 형태에 따라 대출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출채권의 법적성격에 따라 달리 과세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차입자와 투자자간의 직접대출형은 중개인 없는 직접거래방식이나 중개인의 단순중개에 의한 대출거래는 법적성격을 금전소비대차계약형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차입자와 투자자간의 간접대출형은 원리금수취권매매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 집합투자형, 부동산담보대출형으로 나뉜다. 거래 유형별 법적성격은 다음과 같다⁸⁾. 원리금수취권매매형에서 원리금수취권의 법적성격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고 구체적으로 지분증권에 해당될 수도 있다(맹수석과 이호행, 2018).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은 중개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보증보험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자는 부보증인인의 자격으로 연대보증인 자격인 중개업체의 보증보험업에 기여하는 것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수도 있다. 집합투자형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가 갖게 되는 원리금수취권은 익명조합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증권의 종류로는 익명조합에 출자한 지분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제휴 부동산담보형은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의 원리금수취권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유형별 거래형태를 분류하여 법적성격 및 현행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직접대출형 : 금전소비대차계약형

직접대출형은 중개업체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 직접거래 유형과 중개업체가 소개만 해주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차입자와 투자자가 중개업체의 중개 없이 직접거래 하는 대표적인 P2P대출 유형으로 선거철에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이다. 정치인 펀드는 후보자가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쓸 자금을 차입하고 선거 후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적 성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 이와 같은 차입자와 투자자간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과거에 행하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질의회신 중 ‘서면1팀-1513, 2004.11.10.’질의 답변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9)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8) 성희황, 2016.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58-68면을 요약한 것이다.

9) 소득세법 제16조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 이 경우 당해 차입금 중 회수한 금액은 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 시기는 그 이자지급일임”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므로 비영업대금이 이익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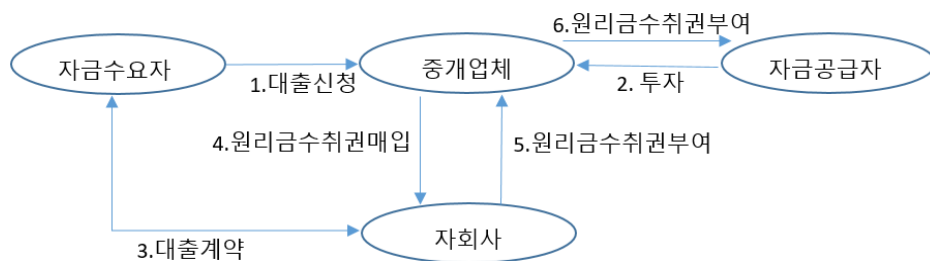
직접계약형의 다른 유형은 차입자와 투자자 간에 직접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중개업체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단순히 소개만 하는 방식이다. 즉, 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차입자의 차입 청약을 게시하고 투자자는 개별적으로 승낙을 하는 경우로서 법적성격은 당사자 간 1:1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 개인 간 매개체가 웹사이트 플랫폼을 통할 뿐, 직접적인 계약 거래이므로 비영업대금이 이익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간접대출형

(1) 원리금수취권매매형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은 차입자와 투자자간 직접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차입자와 투자자간 개입하여 차입자와 대출계약, 투자자와 원리금수취권매매계약을 맺는다. 동 금융기관의 모회사인 플랫폼이 전체적인 거래를 설계하고 운영한다. 이 사업모델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원리금수취권이다. 원리금수취권은 차입자-금융기관-투자자의 3자 관계인 대출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3〉 원리금수취권매매형



출처 ; 윤민섭(2015), “P2P금융에 관한 법적연구”

이 원리금수취권의 법적성격은 지명채권 혹은 증권적 채권으로서 유가증권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차입자와 대부업체간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은 지명채권임이 명확하다. 하지만 이 지명채권이 대출참가로 인해 원리금수취권으로 변환된 후에는 법적성격을 지명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가증권성에 관하여 살펴보자. 차입자는 대출참가에 의하여 지명채권은 원리금수취권으로 변환되고 투자자에게 이전됨을 동의한 것으

로 간주된다. 이후 원리금수취권은 그 자체로 최초 투자자와 제3자간 매매가 가능하다. 이 매매는 해당 플랫폼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플랫폼사의 동의 없이는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유가증권의 양도성에 위배된다. 또한 원리금수취권은 증서에 화체되어 있지 않다. 원리금수취권의 비증서성, 양도제한 등을 감안하면 원리금수취권은 일반적인 유가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¹⁰⁾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성립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법은 규제대상으로서의 ‘증권’의 속성 중 유가증권의 유통성(양도성) 보다 투자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성립될 가능성은 있다.¹¹⁾ 원리금수취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투자성으로 인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성립될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에는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Prosper가 원리금수취권을 표창하는 어음 혹은 투자증서(note)를 발행하는 행위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¹²⁾ 하지만 미국의 P2P 중개업체들은 증권 규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대부분 증권거래소(Security Exchange Commission, SEC)에 등록하고 증권신고서 발행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리금수취권을 표창하는 어음 등은 채무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원리금수취권의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3가지이다. 첫째 원리금수취권을 표창하는 어음 등 증서를 발행한 경우, 둘째 대출채권이 투자계약에 해당하여 이에 참가하는 행위는 증권으로 간주되는 경우, 셋째 대출채권이 아닌, 원리금 수취권자체가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¹³⁾ 첫째의 경우 우리나라는 채무증서가 발행되지 않고, 둘째의 경우 대출채권은 명백히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우리나라에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셋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추상적인 권리가 증서에 화체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권으로 보고 있다. 동법 제4조 제9항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

10) 유가증권의 핵심은 추상적 권리가 구체적 증서에 화체되어, 그 증서의 양도만으로도 권리가 제한없이 양도되는 것이다. 유가증권의 정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설적 입장은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철송, 『어음수표법』(제13판), 박영사, 2014, 22면.

11)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제2),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2014, 72면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는 ‘원활한 유통’이라는 “시장성” 요건을 넘어 ‘투자자보호’와 련 “투자성” 개념이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성’ 개념은 투자자보호와 시장에 대한 신뢰확보가 증권시장의 존립요건이라는 철학적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하고 있다.

12) SEC, SECURITIES ACT OF 1933 Release No. 8984, November 24, 2008, ADMINISTRATIVE PROCEEDING File No. 3-13296. ORDER INSTITUTING CEASE-AND-DESIST PROCEEDINGS PURSUANT TO SECTION 8A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MAKING FINDINGS, AND IMPOSING A CEASE-AND-DESIST ORDER.

13) J. Thomas Cookson, “Loan Participation Agreements as Securities : Judicial Interpretations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and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William & Mary Law Review, Volume 24, Issue 2, 1983, p.322.

권으로 본다.”고 하여 증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규제 대상인 증권임을 명시 하고 있다.¹⁴⁾ 그렇다면 제2항 각호¹⁵⁾의 어느 증권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증권 여부를 살펴보면 대출채권은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으로 채무증권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원리금수취권은 대출채권에서 파생된 특수한 권리라는 성격으로 차입자에게 직접적인 상환요청 혹은 추심 등이 제한되어 일반적인 채무증권에 비해 성격이 약화되어 있다(성희활, 2016).

둘째, 지분증권 여부를 살펴보면 익명조합이나 합자조합의 출자지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이한진, 2012).¹⁶⁾ 즉 중개업체의 대부 자회사는 대부업의 영업 주체로서 투자자의 금전을 출연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업체의 대출을 실행하기 이전에 투자자의 투자의사를 확인하고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부업체 및 투자자가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셋째,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이 아니더라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성희활, 2016). 투자계약증권은 타 종류의 증권에 비해서 규제가 완화되어 있지만, 인가나 불공정거래 규제 및 발행 공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의 4대 요소를 살펴보면, 제1요건 “주로 타인의 노력에 의하여”의 경우 중개업체와 대출기관의 노력에 의존된다. 제2요건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여”의 경우에 일시적인 대여보다는 투자목적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제3요건 “공동사업에 결과에 따른 손익의 귀속”의 경우, 대출기관, 투자자 및 중개업체간 수직적 공동성에 따른 다수의 투자자 구성으로 수평적 공동성을 둘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제4요건 “금전 등을 투자하는 계약, 거래 또는 계획”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원리금수취권은 자본시장법에서 분류하는 증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16) 이한진,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규율체계에 대한 입법적 보완에 관한 연구”논문, 173면은 “자금공급자인 투자자들은 중개자인 P2P대부업체가 직접 보유하거나 일정한 제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대출채권 상의 원리금수취권에 대해 지분적 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중개자와 자금공급자 간에 상법상 익명조합 계약 또는 비전형적 투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 중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P2P중개업체는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의 사업구조에서 중개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 및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 단계에서 투자자는 차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 뿐 아니라, 중개업체의 분배 단계에서의 상환받지 못할 위험도 떠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서 2017.2.27.일에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를 보면 주요 내용 중 ④ (투자광고) “확정수익”, “원금보장” 등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이 보장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이는 P2P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금전의 대여가 아닌 투자의 성격으로 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님이 명백하다.

정리해보면 원리금수취권의 법적성격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고 구체적으로 조합의 출자지분 성격으로 보아 지분증권에 해당될 수도 있다. 원리금수취권의 법적성격에 대해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법 해석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지방세 포함)의 고율로 과세되고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적격 P2P대출 이자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15.4%(지방세 포함)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다.¹⁷⁾

하지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 P2P중개업체를 정의할 뿐, P2P대출의 거래 유형별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P2P중개업체의 중개를 통한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에는 법적성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25%(지방세 제외)세율로 과세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P2P중개업체 정의의 모호함으로 인해 14%(지방세 제외)세율로 과세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2) 담보제공위탁계약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은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 담보제공위탁계약이 체결되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의 관련 당사자는 자금공급자(투자자), 자금수요자(차입자), 중개인, 금융기관이 존재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가 대출 승인 및 이자율 결정을 하고, 거래의 형식은 담보제공이지만, 거래의 실질은 자금공급자의 자금이 자금수요자로 이전하는 것이다. 주로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영업 하는 특성이 있다.

17)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 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의 사업모형은 다음과 같다.¹⁸⁾ ① 자금수요자(차입자)는 중개인과 제3자의 담보제공을 정지조건¹⁹⁾으로 본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금융회사에 예금담보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다.²⁰⁾ ② 자금수요자(차입자)는 P2P금융시장(중개업체)을 통하여 원하는 대출규모, 담보수수료율, 대출기간 등을 게시하고, 소득 및 신용정보를 중개업체를 통하여 자금공급자에게 제공한다. ③ P2P중개업체는 자금수요자(차입자)에게 받은 증빙서류를 확인한다.²¹⁾ ④ 중개업체의 웹사이트에 가입한 자금공급자(투자자)는 담보제공여부를 결정하여 담보제공위탁계약을 체결한다.²²⁾ ⑤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자금수요자(차입자)와 중개업체 간의 보증위탁계약의 효력이 발휘된다.²³⁾ ⑥ 담보제공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금공급자(투자자)는 중개업체에 자금을 이체하여 현금담보를 제공하고 중개업체는 제공받은 현금담보로 금융기관(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다. 자금수요자(차입자)는 채무자, 중개업체는 연대보증인, 금융기관은 채권자, 투자자는 부보증인²⁴⁾의 지위를 갖게 된다.

18) 윤민섭,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463-466면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9)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뜻한다.

20) 팝펀딩 보증위탁약관 제3조 ① 회사와 채무자간의 보증위탁계약은 채무자가 경매를 개설할 당시에 투자자의 충족을 조건으로 표시한 위탁의 의사와 회사가 채무자에게 경매개설절차를 제공할 당시에 투자자의 충족과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절차 완료를 조건으로 표시한 수탁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즉, 채무자는 경매가 낙찰되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에게 자신의 대출채무에 대한 예금담보를 부탁하고 회사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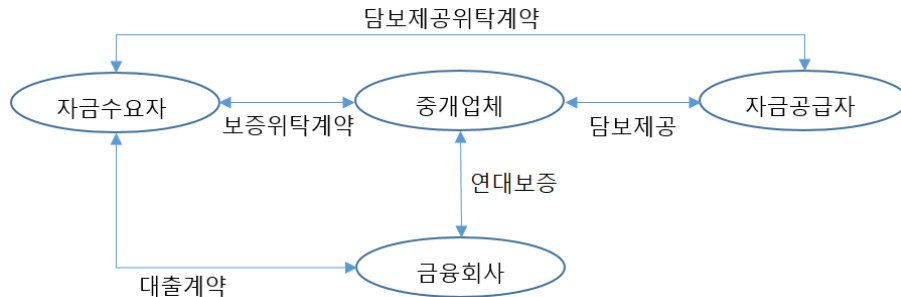
21) 팝펀딩 이용약관 제18조 제5호 회사는 회원이 다른 회원에 의해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2) 팝펀딩 투자위탁약관 제4조 ① 채무자와 투자자간의 투자위탁계약은 팝펀딩(www.popfunding.com)에 대출신청 경매를 개설하는 채무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경매에 참가하여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담보에 필요한 투자금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의사와, 채무자가 개설한 경매에 투자하기로 참여하는 투자자의 투자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즉, 채무자는 경매를 개설하는 행위에 의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탁계약의 청약을 하고, 투자자들은 채무자가 개설한 경매에 참가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를 승낙하여, 경매가 낙찰 되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간에 투자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3) 팝펀딩 투자위탁약관 제4조 ② 채무자가 팝펀딩에 경매를 개설함으로써 투자위탁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는 저축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의 담보설정에 대한 위탁의 의사도 함께 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투자자의 참여로 경매가 낙찰되는 때에 회사와 채무자 간의 보증위탁계약도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24) 보증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다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4〉 담보제공위탁계약형



출처 ; 맹수석 · 이호행(2018), “전자어음과 보증보험”

⑦ 대출계약이 체결된 후 채무자인 자금수요자(차입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 방식은 중개업체는 자금수요자(차입자)로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아 금융기관에 상환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된 대출금에 상당하는 담보금을 반환받아, 담보제공자인 투자자에게 최종적으로 반환하게 된다.

한편 여기서 자금공급자(투자자)가 자금수요자(차입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법률관계가 보다 단순해지고 중개업체는 단순중개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취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행 대부업법 제62조의2 제2항²⁵⁾에 따르면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하기 전에 보증기간 등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자금공급자에게 이런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이 금융기관으로서 매우 번거로운 사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자금공급자(투자자)가 투자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윤민섭, 2012).

이 사업모형에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담보제공위탁계약이 체결되므로 자금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대주가 아닌 수탁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대주가 아니므로 차입자에게 자금 상환을 청구할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본다. 자금수요자(차입자)가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된 부분만큼만 제공한 담보를 상환받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윤민섭, 2012).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은 자금조달의 주체는 자금수요자로 담보제공위탁계약이 먼저 체결된 후

25) 대부업법 제62조의2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순차적으로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다.

중개업체는 투자자에게 보증보험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귀속시키는 형태가 되므로 법적 성격은 투자계약증권이 성립될 수 있다. 쟁점은 “금전 등의 투자”에 현금담보를 제공한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의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에서는 “금전 등의 투자” 요건은 현금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고,²⁶⁾ 일반적으로 ‘신용공여’²⁷⁾나 담보제공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는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²⁸⁾

자본시장법상으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에서 “금전 등”의 개념이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담보제공은 우리나라 법에서도 금전 등의 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담보제공위탁계약형 유형에서 투자자가 부보증인의 위치에서 중개업체의 보증보험업에 기여하는 것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⑥항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이란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운영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대가로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뜻한다. 『소득세법』 제17조 ①항 8호에 따르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 될 여지가 있다.

(3) 집합투자형

집합투자의 사업모델은 전체적인 회사의 구조는 금융플랫폼을 제공하고, 대부업을 수행할 자회사를 만들어 자회사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원리금수취권매매형처럼 하나의 대출채권에 투자 방식과 복수의 대출채권 묶음인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 하는 방식이 있다.

하나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정리한 원리금수취권매매형에 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포트폴

26)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v. Daniel*, 439 U.S. 551, 560(1979). 의무적 연금(compulsary pension plan)의 증권성을 부인한 이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의무적 연금제도하에서 노무출자는 “금전 등을 투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동 판결문 각주 12)에서 이러한 해석이 바로 투자계약이 되기 해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출자는 안되고 반드시 금전의 출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하였다(“footnote 12. This is not to say that a person’s “investment,” in order to meet the definition of an investment contract, must take the form of cash only, rather than of goods and services.”).

27) 신용공여(extension of credit)는 신규 신용제공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 환, 환매, 신용장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보장하는 다양한 수단이 두루 포함되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28) Louis Loss & Joel Seligman, *Securities Regulation*, Volume 2, 3rd Edition, Little Brown, 1998, p.988. (“Similarly an investment may be in the form of an extension of credit or collateral.”) 투자계약증권의 속성과 유형에 한 자세한 분석에 해서는 심인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계약증권’ 개념에 한 검토 —미국 연방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과의 비교법 검토”, 『비교사법』 제15권 1호(통권40호) (2008. 3) 참조.

리오란 개별 P2P 투자상품들의 묶음으로 수십 명의 우량 대출자들에게 자동으로 분산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은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6호 제5항은 집합투자를 정의하기를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든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은 자회사가 자금을 모아 동 자금을 다수의 차입자에게 대출해 준 후 동 대출채권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며 이에 따른 수익금을 투자자들의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집합투자의 정의에 부합한다. 또한 일상적인 운용지시가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재산의 개별성이 없으므로 신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포트폴리오 투자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은 익명조합형 집합투자증권이자 종류로서는 익명조합에 대한 출자를 표창한 지분증권에 해당된다(성희환, 2016).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는 「자본시장과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열거 되어 있지만 대출형P2P 중개업체는 「자본시장과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투자의 법적성격이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증권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 시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부동산담보형

금융기관과 제휴한 부동산담보 P2P대출형의 사업모델은 일반인에 대한 소액대출 투자 방식에서 진화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사업방식은 일반인 소액 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일반적인 원리금수취권매매형 대비 자회사인 여신업체와 별도로 제휴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차입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자회사인 여신업체가 대출업무를 하지 않고, 별도로 제휴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투자자 신뢰도 제고를 위함이다.²⁹⁾ 원리금수취권매매형과 비교하면 대출채권이 부동산 담보채권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구조는 앞에서 논의한 원리금수취권매매형에 대한 법리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차이점은 부동산담보형 모델에서는 원리금수취권매매의 주체가 P2P업체가 아니라 제휴 금융기관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리금수취권은 투자계약증권이나 지분증권에 해당될 수 있어 증권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 시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9) (주) 투게더앱스라는 부동산 P2P 대출 클라우드펀딩 업체의 웹사이트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투게더는 대신저축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뢰’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정직하게 운영하고, 다각도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스타트업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검증된 금융기관인 대신저축은행과 제휴를 맺어, 신뢰를 높이는데 주력했습니다. 대신저축은행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채권 존재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 역할 2) 부동산 담보의 적정성 평가.”라고 하고 있다. 투게더의 여신 자회사는 투게더대부라고 별도로 있다.

2. 유형별 현행 과세 체계 및 문제점

가. 대부업 등록한 투자자

(1) 개인투자자의 P2P대출 투자수익 과세

대부업자로 등록한 개인투자자의 P2P투자에서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³⁰⁾ 사업소득 중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타소득과 합산 후 소득세 기본세율(6%~42%)로 종합과세 된다.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임차료, 인건비, 수수료 및 대손금 등의 업무관련 비용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증명서류 등을 보관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의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미수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³¹⁾

(2) 법인투자자의 P2P대출 투자수익 과세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P2P투자에서 얻은 수익은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25%의 세율로 과세된다.³²⁾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련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관 하여야 한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차료, 인건비, 수수료 및 대손금 등의 업무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여금에 대한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적립 금액, 채권 잔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³³⁾ 이는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100분의 1보다 대손 실적이 클 경우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에 비해

30)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3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33)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손비를 더 많이 계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연도 중에 채무자의 파산 등 법에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자

(1) 개인투자자의 P2P대출 투자수익 과세

비사업자인 개인의 P2P투자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사업을 목적으로 금전의 대여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인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이다.³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³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과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이자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하나, 비영업대금이익은 이보다 높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이 더 높은 이유는 개인 간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함이다. 사업소득과는 다르게 이자소득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다.

비영업대금이익을 포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므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납부함으로써 추가적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 과세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비교 과세를 통하여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익이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이자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 못 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³⁶⁾

(2) 법인투자자의 P2P대출 투자수익 과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의 P2P투자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³⁷⁾ 법인은 비영업대금이익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10%~25%의 세율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되어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므로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 인정이

3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35)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29조 제1항

36)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37)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인이 특수 관계가 없는 상대방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³⁸⁾.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여금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 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결

현행 과세 체계로는 대부업 등록의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혹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P2P대출 투자 관련 현행 과세체계에는 일시적·우발적인 금전 대여인지, 사업성으로 인정되는 금전 대여인지에 따라 비영업대금이익 혹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이를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소득세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P2P대출이 단순히 비영업대금이익 혹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게 아니라, 다양한 P2P대출 사업모형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도 분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P2P대출 사업모형에 따라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P2P플랫폼을 통한 대출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있는 데, 반면에 기존 금융회사에서는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14%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다. 이는 투자수익에 대하여 중개업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수평적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존 금융회사에서 지급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과세하고, 신규 거래인 온라인 플랫폼회사에서 지급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25%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회사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보다 좋다고 할지라도 세율이 높게 과세되므로 경쟁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P2P대출 중개 플랫폼은 차입자 측면에서는 차입자가 온라인에서 채무증권을 상장할 수 있는 사적 발행시장과 같다. 여기서 상장이라 함은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차입자의 대출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투자자 측면에서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대출자산에 대한 투자기회와 함께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같다(이성복, 2018). 정보기술과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금유통의 거래에서 수반되는 탐색비용과 매칭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³⁹⁾ 이는

38)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39) 이성복. 2018.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금융 중개 역할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과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은행이 제공 하는 금융 중개 역할은 감소하고 금융 중개 역할을 제공하는 중개 플랫폼사가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율과 달리 과세할 이유는 없다.

VI. P2P대출 거래 과세 개선방안

1. 대부업 등록 의무화

대부업 등록 여부에 따라 비영업대금이익 혹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P2P플랫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하여 일시적·우발적인 금전 대여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일회성 P2P 플랫폼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발급받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는 기존 절차보다 간편화하여 입법하도록 한다.

P2P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이므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참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였다. P2P투자자가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금전대여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일회성 투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됨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과세형평을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필요경비를 공제해줌이 수평적 과세형평을 맞출 수 있다. 다만, P2P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 하여 사업자등록이 필수가 된다면 전자시스템 망을 통해 간단하게 등록할지라도 P2P대출 시장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비용이나 소요시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불가능하다면 두 번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거래 유형별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가. 직접대출형

직접대출형은 기존 거래와 동일하게 비사업자 간 거래로 보아 법적성격을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으로 분류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간접대출형

P2P대출 중 간접대출형은 그 사업모델에 따라 법적 성격 유형을 투자계약증권, 지분증권, 지분형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하여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세법상은 P2P대출에 대한 투자수익에 대해서 거래유형을 분류하여 적용하지 않고, 비영업대금이익으로 2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P2P투자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 투자로 보아 원리금수취권의 일종인 유가증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가 하여야 한다. P2P상품의 실질은 고위험 채권 투자이거나 지분투자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금융상품 투자와 굳이 달리 적용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P2P플랫폼사의 사업모델에 따라 과세유형을 분류하여 과세함에 있어 P2P플랫폼사나 과세관청의 판단이 모호하여 행정비용 등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세 번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플랫폼사를 금융사 취급하여 14% 세율로 원천징수

기존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투자와 달리 플랫폼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적극적인 사채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고율의 대부 금리를 적용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 금융사에서 제공하던 절차보다 조금 더 간편한 시스템으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상품에 가입하여 투자수익을 발생시킨다. 이는 기존 금융사에 투자하던 금융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14% 세율로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세율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적격 P2P투자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2019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거래 유형별로 법적성격을 분류하여 투자인지 대여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거래 유형별 분류 없이 모두 대여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되고 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간접대출형은 투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해서 “적격 P2P투자에서 얻은 이자소득”으로 한정 하였는데 적격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P2P플랫폼에 투자할 경우 여전히 고율의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된다. P2P플랫폼사가 적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나 타법으로 규제함이 타당하고 투자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차별화 할 근거는 없다고 본다.

VII. 결 론

P2P대출에 대한 과세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들은 기존의 비영업대금이익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P2P투자수익에 대해 25%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과세되고 있다. 대부업 등록의 여부에 따라 P2P대출이 비영업대금이익 혹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게 아니라, 다양한 P2P대출 사업모형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하여 P2P투자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P2P플랫폼을 통한 대출거래를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다. P2P대출 온라인 플랫폼은 100%자회사인 대부업, 대부중개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를 통하여 대출계약을 하고 대출자에게 이자소득에 대해 2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이 납세 과정은 금융기관에서 예금자에게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는 의무와 다르지 않다. 이는 P2P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은 개인 간 파악하기 힘든 금융거래 정보가 아닌,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준하는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인일 뿐 아니라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는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 한다. 일회성 P2P플랫폼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발급받는 것이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절차는 간편화하여 입법하도록 한다. 단, P2P투자를 위하여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 한다면 아무리 전자시스템 망을 통하더라도 P2P대출 시장의 축소를 유발할 수 있고, 행정비용이나 소요시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두 번째 방안인 다음의 P2P대출거래의 사업모델에 따라 과세소득을 분류한다.

P2P대출 사업 모형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에 열거하여야 한다. P2P상품의 성격에 따라 실질은 고위험 채권투자이거나 지분투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14%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다만, P2P플랫폼사의 사업 모델에 따라 과세유형을 분류하여 과세함에 있어 P2P플랫폼사나 과세관청의 판단이 모호하여 행정비용 등이 과도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세 번째 방안인 P2P플랫폼사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통일한다.

P2P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기존 금융사에서 제공하던 절차보다 조금 더 간편한 시스템으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발생시키므로, 14% 세율로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세율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적격 P2P투자에서 얻은 이자수익에 대하여 2019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세율인

하가 아닌, P2P투자에서 얻은 수익은 금융회사에서 만든 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하여 P2P투자의 수익 성격을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님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P2P대출 거래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P2P대출 거래를 세분화하여 유형별로 과세를 달리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P2P대출 거래 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거나 대손처리를 할 수 있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원금공제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 검토,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논문은 P2P대출 거래에 대하여 유형별 거래 형태의 법적성격을 검토하고, 법적성격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리 적용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조세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보도자료, 2018.12. 12.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bs_list.jsp)
- 김덕규·임춘성. 2018. “대출형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의 법적 문제 및 개선 방안”,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 245-275
- 김동우. 2015. “P2P 대출시장현황과 전망” 『금융웹진』 Vol.732
- 김명아. 2016. “클라우드펀딩과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년 제1권 : 105-120
- 김범준·엄윤경. 2017.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의 활용과 금융 투자자 보호 : 미국의 규제체계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 71-98
- 김병우. 2015.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제26권 제1호 : 47-73
- 김정기. 2017. “P2P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의 리스크관리 방향”. 『주택금융월보』 제158호
- 김철진. 2016. “모바일 결제의 신뢰성 향상 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7호 : 319-325
- 고윤승. 2016a. “우리나라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을 위한 활성화 방안 탐색”, 『한국과학예술포럼』 제25권 : 19-32
- _____. 2016b. “클라우드 펀딩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7권 제4호 : 3-19
- 맹수석·이호행. 2018. “전자어음과 보증보험”, 『비교사법』 제25권 3호 (통권82호) : 864-869
- 문병순·허지성. 2014.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LG Business Insight
- 박대현. 2014.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KISA Internet & Security Focus』
- 박서기. 2015. “핀테크 산업 동향과 주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제19권 제1호 : 1-8
- 박재연·유재필·신현준. 2016.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관리”, 『정보화연구(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제13권 제3호 : 467-476
- 배재권. 2018. “P2P 대출상환의 결정요인과 P2P 대출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6권 제2호 : 21-36
- 성희환. 2016. “P2P 대출형 클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 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0권 제4호
- 손영화. 2016. “P2P대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한양법학』 제27권 제3호 : 131-165
- 손진빈·류두진·박채진. 2019.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규제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고”, 『금융공학연구』 제18권 제2호 : 119-150
- 송경석. 2015. “핀테크 결제시스템의 비즈니스모델 탐색”, 『e-비즈니스 연구』 제16권 제6호 : 65-94

- 유현선. 2018. “핀테크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IT 기업의 전략”, 『인터넷 전자상거래연구』 제18권 제3호 : 41-69
- 윤민섭. 2012.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학회』 제9권 제2호 : 454-455
- _____. 2014. “非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제문제와 개선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42호 : 103
- _____. 2015. “핀테크(Fintech)와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정책연구 보고서』 : 1-123
- 이경진. 2016. “핀테크의 이해”, 『정보시스템연구』 제25권 제2호 : 173-174
- 이성복. 2015. “핀테크 혁신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금융리스크리뷰』 : 55-101
- _____. 2018.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금융중개 역할에 관한 연구”, 『Journal of Money & Finance』 Vol. 32
- 이한진. 2012.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규율체계에 대한 입법적 보완에 관한 연구”, 『증권업법 연구』 제15권 제3호 : 173
- 임철수. 2017. “핀테크 기술과 서비스 활성화 이슈 및 시사점 연구”, 『한국차세대 컴퓨티학회 논문지』 2017년 2월호 : 41
- 장순필. 2018. “인도네시아의 클라우드 펀딩 규제”,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2호 : 309-345
- 전병욱. 2018. “P2P대출의 조세회피 분석 및 대응방안”,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 337
- 정기석. 2015.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4호 : 79-88
- 정 대 · 학회연. 2017. “영국과 중국의 핀테크산업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1권 제2호 : 281-315
- 조은영 · 김희웅. 2015.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 방안”, [NIA] 정보화정책, 제22권 제4호
- 주강진 · 이민화 · 양희진 · 류두진. 2016. “핀테크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제45권 제1호 : 145-170
- 최수석 · 손재영. 2017. “크라우드펀딩의 부동산 산업 활용현황과 과제”, 『일감부동산법학』 제15권 : 51-74
- 최진용 · 김길선. 2019. “글로벌 융복합 핀테크 혁신과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사례연구 : Forbes 선정 스타트업(Start-up)을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제23권 제3호 : 69-97
- 최창열. 2015. “핀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론적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16권 제4호 : 86-8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세법연구 12-13 주요국의 채권 자본이득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자료
- _____. 2016. 『주요국의 조세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자료

- Amit, R., & Zott, C. 2015. "Crafting business architecture : The antecedents of business model design".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9(4) : 331–350.
- Dahlberg, T., Mallat, N., Ondrus, J. & Zmijewska, A. 2008. "Past, present and future of mobile payments research : A literature review."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7(2) : 165–181.
- Galloway, I. 2009. "Peer-to-peer lend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Community Investments*, 21(3) : 19–23.
- Karnouskos, S. & Fokus, F. 2004. "Mobile Payment : A Journey through Existing Procedures and Standardization Initiatives." *IEEE Communications Surveys and Tutorials*, 6(4) : 44–66.
- Malekipirbazari, M., & Aksakalli, V. 2015. "Risk assessment in social lending via random forests".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42(10) : 4621–4631.
- Milne, A., & Parboteeah, P. 2016. "The business models and economics of peer-to-peer lending".
- Sironi, P. 2016. "FinTech innovation : from robo-advisors to goal based investing and gamification". *John Wiley & Sons*
- Song, J. G., Kim, T. Y., Lee, H. J., & Jang, W. T. 2012. "A new password authentication scheme using two-way password in Smartphone Banking.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12(3) : 195–200.
- Yin, H. 2016. "Status quo of the US and UK's P2P lending regulation". *Global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 Zeng, R. 2013. "Legal Regulations in P2P Financing in the US and Europe". *US-China L. Rev*, 10 : 229.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512&no=24&s_title=P2P&s_kind=title&page=1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299&no=2&s_title=로보어드바이저&s_kind=title&page=1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925&no=22&s_title=P2P&s_kind=title&page=1
- www.popfnunding.com

A Study on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of the Current Taxation on FinTech Transactions - Focusing on P2P loans -

Yeon Hwa Lee* · Sung Ook Park** · Hyung Jong Na***

〈Abstract〉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Fintech has received much attention as a new alternative to utilizing the financial system in existing models. As expected from the technology develop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ntech has converged the existing finance with IT technologies and their servic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payments, remittances, asset management, and loans. The development of the P2P transactions enabled the lending of fintech services without going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The volume of P2P-accumulated loans reached about 6.2 trillion won at the end of June 2019, more than a 10-fold increase from the end of 2016. This is a stable investment by investors with extra funds, and transactions are brisk because borrowers have relatively low interest rates.

Individuals who are not registered as lenders for the P2P loan investment returns are taxed on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 view of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Individual business operators or corporations registered as loan businesses are classified as business income and can be deducted as a deduction by deducting the related expenses into the required expenses. This raises the issue of taxing the loan differently by categorizing it as business income or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terest income) depending on whether the loan is registered.

In addition, the legal statements for P2P loan transactions can be classified into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equity securities, and equity-type collective investments, with all P2P loan transaction returns taxed as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The government revised the plan to temporarily cut the withholding tax rate to 14 percent for two years from 2019 on interest income earned by individual investors from eligible P2P investments, a vague part of classifying all gains from P2P investments as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 Tax Accountant, Maste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Kyung Hee University, dusghk836@naver.com,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sopark@khu.ac.kr, Corresponding Author

*** Research Professor, SKK Business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fresh_na_77@hanmail.net, Co-author

In this study, we find problems and make suggestions of the current taxation on fintech transactions. First, it is mandatory to register a loan in order to make a P2P loan transaction without having to be classified according to whether or not a loan is registered. In the event of a one-time transaction, obtaining a business registration may be a hassle, so the process of registering a business license should be simplified and legislated so that it can be done over an electronic system network.

Next, it is reasonable for P2P loan transactions to be classified a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equity securities, and equity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business model and taxed on dividend income rather than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t is reasonable to classify P2P loan transactions as the nature of investment rather than loan of money as they pose a risk of not being repaid in the distribution stage of P2P brokerage houses.

Finally, the services provided by P2P Platforms are easier than the procedures provided by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generate returns from investments online or mobile, and thus require the same withholding tax rate of 14 per cent as financial institutions. The government lowered the tax rate to “on interest income from eligible P2P investments.”. Failure to comply with this qualifying requirement makes it reasonable to regulate P2P platform companies by capital market law or other laws.

<Key words> Fintech taxation, P2P loan, interest of non-business loan